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페블스톤자산운용(주)
(영문명) Pebblestone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www.ps-amc.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Tower D1 18층
(전 화) 02-2000-6805

대 표 이 사 : 황 태 웅

담 당 임 원 : (직 책) 준법감시인/ 전무
(성 명) 안병수 (전 화) 02-2000-6804

작 성 자 : (직 책) 투자운용1본부 / 대리
(성 명) 김상호 (전 화) 02-2000-6829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2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1심)

1. 사건의 명칭	이행보증금반환(2023가합68430)
2. 원고·신청인	페블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원고패소
4. 판결·결정사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6. 판결·결정일자	2024.04.25
7. 확인일자	2024.04.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3.06.09.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건입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의 판결·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